

교직원 포상 규정

제정 1995. 06. 28.

제6차 개정 2021. 01. 2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포상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의 대상)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장기 근속한 교직원과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및 부서에 대하여 수여한다.

제3조(포상의 사유) 포상은 제2조의 포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수여한다.

1. 15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다른 자의 모범이 된 때
2.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학교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
3. 재해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현저할 경우
4.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자 중 공로가 인정되는 자 (호 신설 2014.2.18)
5. 기타 본교에 대한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을 때 (호 번호 변경 2014.2.18)

제4조(포상의 종류) ① 포상은 공로상과 근속상으로 한다.

- ② 공로상은 제3조 제2호, 제3호, 제4호,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 (개정 2014.2.18)
- ③ 근속상은 제3조 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하며 15년 근속과 이후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- ④ 제3항의 경우 근속기간은 본교에 서 재직한 연수로 계산한다.

제5조(포상의 신청) ① 각 부서의 장은 교원, 직원 또는 부서에 표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가 있을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을 신청한다.

- ② 포상을 신청할 때에는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연구처장, 직원에 대하여는 행정지원처장을 경유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에 수상후보자를 추천한다. (개정 2019.06.25)

제6조(포상의 심사) ① 포상은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단, 근속상 및 퇴직자에 대한 공로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(개정 2014.2.18)

- ② 해당 인사위원회는 제출된 포상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의 시기, 부상) ① 근속상은 매년 개교기념일에 시행하고, 공로상은 수시로 행한다.

- ②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.
- ③ 수상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평정에 있어서 이를 가점으로 반영한다. 총장의 추천을 받아 정무기관등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.

제8조(포상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.

1.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3.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

제9조(포상권자) 포상은 총장이 행한다.

제10조(포상의 특례) ① 본교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**동문, 외부인사 또는 단체**를 포상할 수 있으며,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8.02.12., 2018.05.23., 2021.01.22)

- ② 각종 경기대회 및 교육훈련에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는 상장을 수여하고 부상을 줄 수 있다.

제11조(이중포상의 금지)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(학내·외)으로 행할 수 없다.

제12조(대리자의 수령)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법인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본교 근무 경력으로 본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140, 2014.2.18)

이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78, 2018.02.12)

이 규정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80, 2018.05.23)

이 규정은 2018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50, 2021.01.22)

이 규정은 2021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